

## 위원회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GTX-B노선(용산~상봉) 제4공구(T/K) 실시설계」 경관심의

□ 심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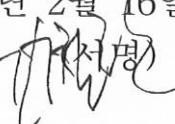
(해당란에 “○”)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기각	비고
제1공구		○			

### ◦ 사유 :

- 환기구, 수직구건축물, 보도육교 등 기본 컬러 및 재료를 모두 차가운 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자연 및 거주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부족함, 설치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재료 및 디자인 개선 필요.
- 건축물의 경사면 디자인은 사람들의 접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건축물 지붕의 사각큐브의 디자인이 다소 과해 보이며, 조형성을 해치는 것으로 사료됨, 반드시 필요한 기능과 형태가 아니면 축소 또는 삭제 권장함.
- 보도육교 설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과도한 유리의 사용으로 유지관리의 문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성명 : 김 철 환  


국가철도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GTX-B노선(용산~상봉) 제4공구(T/K) 실시설계」 경관심의

□ 심의 의견

(해당란에 “○”)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기각	비고
제1공구	○				

◦ 사유 : 보도육교는 열차운행에 지장없도록 조명시설을 최소화하고, 수직구, 환기구 등 지상돌출 구조물계획의 원안 디자인은 적절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16 일

성명 : 이근배 *이근배* (서명)

국가철도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GTX-B노선(용산~상봉) 제4공구(T/K) 실시설계」 경관심의

□ 심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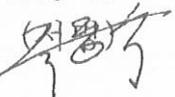
(해당란에 “○”)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기각	비고
제1공구		○			

◦ 사 유 : 열차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보도교 이용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등의 설치가 필요해 보임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16 일

성 명 : 국·중·식 

국가철도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GTX-B노선(용산~상봉) 제4공구(T/K) 실시설계」 경관심의

□ 심의 의견

(해당란에 “○”)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기각	비고
제1공구		○			

### ◦ 사유 :

- 환기구 및 수직구가 위치하는 장소는 녹지 및 거주지 밀집 지역으로, AL패널의 N6 색상은 다소 차갑고 무거운 느낌을 줄 수 있어 난색 계열의 색으로 변경을 요함.(7.4Y 8.7/0.5 또는 8.4Y 8.3/0.5)
- 램프 및 계단부의 난간, 접합강화유리 프레임 등은 SST자체의 색상보다 빛 반사 등 방지를 위하여 불소수지 도장 처리(N2)가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불소수지 도장이 어려울 경우 헤어라인 가공 처리를 통해 빛반사를 최소화 하기를 권장함
- 보도육교의 경우 야간 이용 보행자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캐노피 및 계단 부분에 조명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바닥 아스콘은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명도 저채도의 색상을 적용하기를 권장함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성명 : 송슬기 

국가철도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GTX-B노선(용산~상봉) 제4공구(T/K) 실시설계」 경관심의

### □ 심의 의견

(해당란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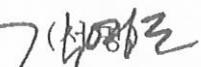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기각	비고
제1공구		○			

### ◦ 사유

- 구리시에 설치되는 보도육교의 시·종점부는 연접한 보도와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동일한 포장재 및 색채를 적용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 또한, 2025 구리시 경관계획 및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준수하여 세부계획 수립하시기 바라며, 향후 야간 경관조명 계획이 있을 시 별도 협의 바람.
- 기 구리시와 협의된 사항을 반영해주시기 바라며(구리시 균형개발과, 도로과 등), 협의의견 반영 및 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디자인 변경 발생 시 구리시 도시계획과와 별도 협의바람.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일

성명 : 김영도 

국가철도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